

신청인 첨부서류	가. 지정 신청 시 1)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22조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(도축업·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자만 해당합니다) 1부 2) 시설 평면도 1부 3) 관리수의사·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 “[제3항에 따라 관리수의사나 검역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(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은 제외한다)만 해당합니다] 1부 4) 가공처리공정서(제품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합니다) 1부 나. 지정변경 신청 시 1) 검역시행장 지정서 1부
담당공무원 확인 사항	건물등기사항증명서(수입축산물만 해당합니다)

